|  |  |  |
| --- | --- | --- |
| **2.1.1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  2004년 6월 18일 세관총서 령 제117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행정허가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세관의 효과적인 행정관리를 보장, 감독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이하 '행정허가법'이라 약칭함),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약칭함) 및 기타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세관행정허가란 세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약칭함)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에 의한 심사를 통해 세관의수출입 감독관리 관련 특정 활동의 종사를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세관행정허가의 규정, 관리, 실시,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상급세관이 하급 세관의 인사, 재무, 외사 등 사항에 대한심사허가와 기타 기관 또는 세관이 직접 관리를 실시하는 업체의 인사, 재무, 외사 등 사항에 대한세관의 심사허가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세관은 행정허가 실시 시 마땅히 공개, 공정, 공평, 편민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세관의 행정허가 규정은 마땅히 공개해야한다. 세관의 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사생활에 관련되는 내용외, 마땅히 공개해야한다.  **제5조** 세관은 행정허가 실시 시,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과 세관총서의 규장규정범위 내에서 진행해야한다.  **제2장 세관행정허가의 규정**  **제6조**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결정이 설정한 세관행정허가 실시 과정중 실시절차, 조건과 기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총서가 법에 의해 세관총서규칙을 제정하여 규정한다.  세관총서, 직속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실시과정 중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결정과 세관총서 규장에 근거하여 규범성 문건의 형식으로 관련 집행중의 구체적인 문제를 확정한다.  **제7조** 세관총서가 제정한 세관총서규장과 기타의 규범성문건 및 각 직속세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은 세관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제8조** 직속세관은 새로운 세관행정허가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의 설정, 규정이 불합리하여 수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총서에 입법제안을 할 수 있다.  세관총서는 새로운 세관행정허가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의 설정, 규정이 불합리하여 수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시에 국무원법제부문에 입법제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입법계획에 근거하여 법률, 행정법규초안을 대리 기초할 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 직속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실시시 마땅히 적시에 세관업무요원,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행정허가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고 아울러 세관총서의 요구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세관총서에 보고해야한다.  세관총서는 직속세관의 보고에 근거하여 적시에 세관행정허가 실시 평가보고를 제출하고 아울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전국인대 상무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세관행정허가의 관리**  **제10조** 세관행정허가의 담당 관리부서는 세관법제부문이다.  **제11조** 세관총서법제부문은 세관총서의 세관행정허가 관련 담당 관리부서이며 구체적으로 하기 사항을 담당한다.  (1) 세관행정허가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등기, 평가를 실시한다.  (2)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입법제안을 수집, 집합, 처리한다.  (3) 공민, 법인, 기타조직의 세관행정허가 관련 신소, 신고, 제안을 수리, 확인하며 자문을 해답한다.  (4) 공민, 법인, 기타조직의 세관총서 행정허가 관련 행정재의, 행정응소안건을 담당하며 각급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관련 행정재의, 행정응소사항에 대해 지도를 실시한다.  (5) 각급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6) 각급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실시업무에 대한 지도, 협조를 제공한다.  (7)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규장 규정의 세관총서가 담당해야하는 기타의 세관행정허가 종합관리사항  **제12조** 각 직속 세관법제부문은 각급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담당 관리부서이며 구체적으로 하기 사항을 담당한다.  (1)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입법제안, 당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실시상황 등을 수집, 집합, 보고한다.  (2) 공민, 법인, 기타조직의 당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실시 관련 신소, 신고, 제안을 수리, 확인하며 자문을 해답한다.  (3) 공민, 법인, 기타조직의 관할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실시 관련 행정재의를 수리한다.  (4)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당 세관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실시관련 행정응소를 담당하거나 지도한다.  (5) 당 세관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실시관련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6) 당 세관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관련청문회를 조직한다.  (7) 당 세관 관할구 세관행정허가 실시작업을 지도, 협조한다.  (8)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이 규정한 직속 세관이 담당해야 하는 기타의 세관행정허가 종합관리사항  **제13조** 세관총서 법제부문은 규범성문건에 대한 일상심사 실시시, 또는 행정재의 안건 심리과정 중 규범성문건에 대한 심사 실시시, 하기 상황을 발견하면 마땅히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1) 사사로이 세관행정허가를 설정한 경우  (2) 세관행정허가에 대한 규정시 상위법이 설정한 세관행정허가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상위법이 설정한 세관행정허가 조건을 초과하여 규정한 경우  (4) 행정허가법 규정을 위반한 기타의 경우  **제14조** 직속세관 법제부문은 본 세관제정의 규범성문건에 대한 심사 실시 과정에서 규범성문건에 세관행정허가 위반내용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시정을 제안해야한다.  **제15조** 세관총서법제부문은 직속세관이 송부한 규범성 문건 중에 행정허가법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행정허가를 설정, 규정한 내용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직속세관에 자발시정을 명해야한다.  **제1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세관총서 규장 및 기타 규범성문건에 행정허가법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면 세관총서 또는 각급세관에 반영할 수 있다. 규장이외의 세관행정허가 관련 규범성문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행정허가 구체행정행위에 대한 재의 신청시 일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세관행정허가의 실시**  **제1절 세관행정허가의 실시기관**  **제17조** 세관은 마땅히 법정 권한 내에서 당 세관의 명의로 세관행정허가를 통일 실시해야한다.  세관내부기구와 세관파출기구는 자신의 명의로 세관행정허가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세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세관행정허가의 실시를 위임할 수 있다. 세관은 위임받은 세관 또는 기타의 행정기간 및 위임을 받아 실시하게 되는 행정허가내용을 공고해야한다. 위임세관은 위임행위의 후과에 대해 법에 의한 법률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을 받은 세관 또는 기타의 행정기관은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 세관내부의 여러 기구가 세관행정허가사항을 취급해야하는 경우, 당 세관은 마땅히 그중 하나를 확정하여 세관명의로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통일 수리하도록 하고,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통일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신청과 수리**  **제19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세관의 수출입 감독관리 관련 특정 활동에 종사시,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세관에 신청을 제출해야한다.  **제20조** 세관행정허가의 신청은 마땅히 서면 형식으로 제출해야한다. 고정양식의 신청서를 채용해야하는 경우, 세관은 마땅히 신청인에게 세관행정허가 신청서 양식을 제공해야하며 아울러 시범양식과 작성설명을 업무장에 공시해야한다. 신청서양식에는 세관행정허가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제21조** 세관행정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세관사무장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서한,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신청서류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한다.  **제22조**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이 세관 업무장에서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권위탁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권위탁서에는 마땅히 하기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하며 위탁인이 서명날인하고 아울러 위탁일자를 표시해야한다.  (1) 위탁인 및 대리인의 약력. 위탁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마땅히 명칭, 주소지, 전화, 우편번호, 법인대표 또는 책임자의 성명, 직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하며 위탁인 또는 대리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마땅히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주소지, 전화 및 우편 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해야한다.  (2) 세관행정허가 신청의 대리 제출, 증명서류의 제출, 법률문서의 수수 등의 위탁사항과 권한  (3) 위탁대리 개시일자와 종지일자  (4) 법률, 행정법규 및 세관총서 규장에 규정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한 기타의 사항  **제23조** 신청인은 세관행정허가 신청시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의 규장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하며 아울러 신청서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한다.  세관은 신청인에게 신청하는 세관행정허가 사항과 무관한 기술자료와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24조** 신청인이 제출한 세관행정허가 신청에 대해 세관은 마땅히 하기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이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이 법에 의해 당 세관 직권범위가 아닌 경우, 즉시 수리하지 않는 다는 결정을 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기타 세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신청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세관행정허가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마땅히 수리하지 않는 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4) 신청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또는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당장 또는 신청서류 접수후 5일내 신청인에게 보충이 필요한 전부의 내용을 일괄 고지해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접수일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신청서류에 단순히 문자, 기술 또는 장정 등의 당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신청인이 당장에서 정정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이 정정내용에 대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6) 신청사항이 당 세관 직권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또는 신청인이 당 세관의 요구에 따라 전부의 보충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전관 제(1),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지한 경우, 또는 행정허가신청을 수리 또는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필요한 '세관행정허가 신청 고지서', '세관행정허가 신청 수리 결정서', '세관행정허가 신청 기각 결정서'를 제작 발급해야 하며 아울러 당 세관 행정허가 전문 인장을 날인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수량 제한이 있는 세관행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신청 수리 결정서'에 수리 선후순서를 표시해야 한다.  **제25조**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사항 담당기구 또는 본 방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통일 수리하는 기구의 세관행정허가 신청 접수일을 세관의 세관행정허가 신청수리일로 한다. 서한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세관의 서한 접수일을 신청일로 한다.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세관이 증명효력이 있는 서류를 접수한 일자를 신청일로 한다.  **제26조** 신청인이 전부의 보충서류를 보충하여 세관이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보충서류를 전부 보충 제출한 일자를 세관행정허가 신청수리일로 한다.  **제27조**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의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3절 심사와 결정**  **제28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신청 수리 후, 마땅히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의 규정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류의 실질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세관행정허가의 기타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제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은 관련 내용에 대한 진일보의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관행정허가 신청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경우 세관은 마땅히 2명 이상의 업무요원을 파견하여 공동 실시해야 한다. 확인검사요원은 마땅히 확인검사상황에 대한 확인검사기록을 제작하고 아울러 확인검사요원과 확인검사를 받은 측이 공동 서명날인하고 확인해야 한다. 확인검사를 받은 측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확인검사요원은 마땅히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29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여 당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당장에서 서면의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당장에서 세관행정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당장에서 결정서를 제작발급하고 아울러 당세관의 인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밝히며, 동시에 '세관행정허가 신청수리 결정서'는 더 이상 제작, 발급하지 않는다.  **제30조** 세관은 행정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실시시, 행정허가 사항이 타인의 중대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신청인,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인은 진술과 변명의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인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세관의 행정허가 전문인장을 날인한 '세관행정허가 이해관계인 고지서'를 직접 제작 발급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불확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공고방식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할 경우에는 마땅히 신청인의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동시에 첨부해야 하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세관은 마땅히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변명의견은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심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1조**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규정에 세관행정허가 실시시 마땅히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된 사항 또는 세관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익과 기타의 중대한 세관행정허가 관련 사항은 마땅히 사회에 공고하고 아울러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가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대 이익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결정전 마땅히 신청인, 이해관계인에게 청문회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세관은 반드시 청문기록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 청문의 구체방법은 세관총서에서 별도 제정한다.  **제32조** 당장에서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은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내 결정을 해야 한다. 20일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세관 책임자의 허가를 거쳐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세관행정허가 심사기한 연장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고 연장기한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3조** 법에 의해 먼저 하급 세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세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하는 세관행정허가는 하급세관이 법정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여 전면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세관행정허가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과 전부의 신청서류를 직접 상급세관에 보고, 송부해야 한다. 상급세관은 마땅히 하급 세관이 송부한 심사의견 접수일로부터 20일내 결정을 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4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조건, 표준에 부합할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허가해야 하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의해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 허가여부 결정은 마땅히 상응한 결정서를 제작 발급하고 아울러 당 세관의 인장을 날인하고 날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법에 의해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의해 행정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35조** 신청인은 세관이 세관행정허가 결정 전 세관에 세관행정허가의 철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 세관은 허가결정을 하고 세관행정허가 증명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결정일로부터 10일내 신청인에게 세관인장을 날인한 하기 세관행정허가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1) 허가증 또는 기타의 허가 증명   (2) 자격증, 자질증명 또는 기타의 합격증명   (3) 세관행정허가를 허가하는 허가서류 또는 증명서류   (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 세관행정허가 증명  **제37조** 세관행정허가의 적용범위에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취득한 세관행정허가는 전 세관 범위내에서 유효하며 세관행정허가의 적용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마땅히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의 적용에 유효기한 제한이 있는 경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허가결정 시, 마땅히 그 유효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4절 변경, 연장 및 철회**  **제38조** 피허가인은 세관행정허가 취득후 종사하는 활동의 부분적인 내용이 세관행정허가 허가결정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 규정의 활동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기타의 변화로 인하여 세관행정허가의 관련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행정허가를 허가한 세관에 원 세관행정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마땅히 세관행정허가의 변경조건, 변경절차를 공고함으로서 피허가인이 법에 의해 변경수속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9조** 피허가인은 세관행정허가 변경 요구 제출 시, 마땅히 당 행정허가의 유효기내 서면형식으로 세관행정허가를 허가한 세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 피허가인이 제출한 세관행정허가 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세관행정허가를 허가한 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정조건, 표준에 부합할 경우, 마땅히 변경을 허가하고, 아울러 법에 의해 변경수속을 실시해야 한다.  세관은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변경여부를 결정할 때 마땅히 적시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최장기한이 세관행정허가 결정의 법정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41조** 변경을 신청하는 사항이 기타 세관의 세관행정허가에 속할 경우, 신청인은 마땅히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를 재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변경형식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제42조** 피허가인이 법에 의해 취득한 세관행정허가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유효기 만료30일전에 세관행정허가 결정 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3조** 피허가인이 제출한 세관행정허가 유효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허가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해야한다. 여전히 세관행정허가 조건에 부합하고 아울러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 규정의 세관행정허가 연장에 필요한 기타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연장허용 결정을 해야 한다. 세관행정허가 취득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규정의 세관행정허가 연장에 필요한 기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44조** 세관은 마땅히 세관행정허가 유효기한내 연장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세관은 사사로이 이미 발효된 세관행정허가를 개변해서는 안된다.  세관행정허가에 근거로 되였던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이 수정, 폐지되었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에 근거로 되였던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공공이익의 수호를 위하여 세관이 법에 의해 이미 발효된 세관행정허가를 변경 또는 철회함으로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보상해야 한다.  보상절차와 보상금액은 세관총서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46조** 세관이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변경수속, 세관행정허가 유효기 연장을 허가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의해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 철회할 경우, 마땅히 세관인장을 날인한 결정서를 제작 발급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아울러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의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제기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5절 특별절차**  **제47조** 세관행정허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본 절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본 절 규정을 적용하고 본 절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장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 수출입 활동에서 대중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공공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종에서, 법인 또는 기타의 조직에 수출입 활동관련 특수 활동 자격, 자질을 부여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전문요원 구성, 기술조건, 경영업적과 관리수준 등에 대한 평가,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세관의 행정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6절 회  피**  **제49조**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취급하는 세관업무요원이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근친이거나 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과 세관행정허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의 관계가 있는 경우, 마땅히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취급하는 세관업무요원이 세관행정허가 사항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근친이거나, 또는 이해관계인과 세관행정허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의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해관계인은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취급하는 업무요원이 신청인의 근친이거나 또는 신청인과 세관행정허가의 공성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회피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50조** 세관행정허가를 취급하는 세관업무요원의 회피는 세관행정허가 심사허가기구 책임자가 결정하며 세관행정허가 심사허가 기구 책임자의 회피는 세관행정허가 심사허가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5장 감독검사**  **제51조** 상급기관은 마땅히 하급기관의 세관행정허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세관행정허가 실시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세관법제, 감찰, 검사부문은 세관행정허가 위법실시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제52조** 세관은 마땅히 건전한 감독검사 제도를 건립하고 검사를 통해 피허가인의 세관행정허가 사항 활동종사 관련 자료를 반영하고 감독검사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세관은 피허가인의 생산경영 장소에 대해 법에 의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시, 세관은 법에 의해 피허가인이 송부한 관련 자료를 조회하거나 또는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수 있으며 피허가인은 마땅히 관련 상황과 자료를 여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의해 피허가인의 세관행정허가 사항 종사활동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 시, 마땅히 감독검사과정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관리 요원이 서명날인하고 아울러 기록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인은 세관의 감독검사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단, 국가비밀, 상업비밀과 세관 업무비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3조** 세관은 감독검사 실시 시, 피허가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피허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수수해서는 안되며 기타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제54조** 피허가인이 세관행정허가 결정의 세관 관할구역 외에서 세관행정허가 사항활동에 위법 종사할 경우, 위법행위 발생지의 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피허가인의 위법사실, 처리결과를 세관행정허가 결정세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55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세관행정허가 사항에 위법으로 종사하는 활동을 발견하게 되면 세관에 신고할 권리를 가지며 세관은 마땅히 적시에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56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세관행정허가 결정세관 또는 그 상급세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또는 법에 의한 직권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세관업무요원이 직권 남용, 직무태만으로 세관행정허가를 결정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벗어나 세관 행정허가를 결정한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세관행정허가를 결정한 경우   (4) 신청자격 또는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게 세관행정허가를 허가한 경우   (5)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피허가인이 사기, 뇌물수수 등의 부당수단을 통해 세관행정허가를 취득한 경우, 마땅히 취득한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전관 규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함으로서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조성할 경우, 취소하지 않는다.  **제57조** 피허가인이 세관행정허가 취득 후 위법활동에 종사하여 법에 의해 그가 취득한 세관행정허가 증명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증명을 회수해야 한다.  **제58조** 세관행정허가의 취소, 세관행정허가 증명의 회수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 또는 세관총서 규장 규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9조** 행정허가법 및 본 방법 제57조 제1관의 규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피허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세관은 법에 의해 그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본 방법 제57조 제2관의 규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를 취소할 경우, 피허가인이 세관행정허가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보호받지 않는다.  **제60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세관은 마땅히 법에 의해 세관행정허가 관련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1) 세관행정허가 유효기가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은 경우   (2) 공민에게 특정자격을 부여한 행정허가가 공민이 사망했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해 종지된 경우   (4) 세관행정허가가 법에 의해 취소, 철회되었거나 또는 세관행정허가증명이 법에 의해 회수된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해 세관행정허가 사항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세관행정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6장 법률 책임**  **제61조** 세관 및 세관업무요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허가법 제7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2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 규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3조** 세관업무요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소재 세관의 인사, 감찰부문이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소재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결정을 하며 아울러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한다.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64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신청서양식 제공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실시와 세관행정허가 사항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시,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마땅히 세관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재정에서 예산 보장을 하고 허가받은 예산에 따라 경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65조** 세관은 세관행정허가 실시시,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비용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 마땅히 공고한 법정 항목과 표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수취한 비용은 전부 국고에 상납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도 억류, 유용하거나 또는 착복 또는 변상적으로 착복해서는 안된다.  **제66조** 본 방법 규정의 세관행정허가 실시기한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67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68조** 본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  **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2004年6月18日海关总署令第117号发布  根据2014年3月13日海关总署令第218号修改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海关行政许可，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维护公共利益和社会秩序，保障和监督海关有效实施行政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以下简称《行政许可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以及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的海关行政许可，是指海关根据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以下简称申请人）的申请，经依法审查，准予其从事与海关进出关境监督管理相关的特定活动的行为。  **第三条** 海关行政许可的规定、管理、实施、监督检查，适用本办法。  上级海关对下级海关的人事、财务、外事等事项的审批，海关对其他机关或者对其直接管理的事业单位的人事、财务、外事等事项的审批，不适用本办法。  **第四条** 海关实施行政许可，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便民的原则。  海关有关行政许可的规定应当公开。海关行政许可的实施和结果，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外，应当公开。  **第五条** 海关实施行政许可应当在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和海关总署规章规定的范围内进行。  **第二章 海关行政许可的规定**  **第六条** 海关在实施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决定设定的海关行政许可过程中需要对实施的程序、条件、期限等进行具体规定的，由海关总署依法制定海关总署规章作出规定。  海关总署、直属海关在实施海关行政许可过程中可以根据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和海关总署规章以规范性文件的形式对有关执行中的具体问题进行明确。  **第七条** 海关总署制定的海关总署规章和其他规范性文件以及各直属海关制定的规范性文件不得设定海关行政许可。  **第八条** 直属海关认为需要增设新的海关行政许可或者认为海关行政许可的设定、规定不合理、需要修改或者废止的，可以向海关总署提出立法建议。  海关总署认为需要增设新的海关行政许可或者认为海关行政许可的设定、规定不合理、需要修改或者废止的，可以适时向国务院法制部门提出立法建议，或者根据立法计划在代为起草法律、行政法规草案时纳入有关条文。  **第九条** 直属海关在实施海关行政许可时应当及时收集海关工作人员、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于海关行政许可的反映，并且根据海关总署的要求对海关行政许可的实施作出评价，报告海关总署。  海关总署根据直属海关的报告适时提出海关行政许可实施评价报告，按照规定程序上报国务院或者全国人大常委会。  **第三章 海关行政许可的管理**  **第十条** 海关行政许可的归口管理部门是海关法制部门。  **第十一条** 海关总署法制部门是海关总署关于海关行政许可的归口管理部门，具体承办下列事项：  （一）对海关行政许可项目进行审查、登记、评估；  （二）根据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的规定，收集、汇总、处理关于海关行政许可的立法建议；  （三）受理、核实公民、法人、其他组织关于海关行政许可的申诉、举报、意见建议，解答咨询；  （四）承办公民、法人、其他组织关于海关总署行政许可的行政复议、行政应诉案件，指导各级海关有关海关行政许可的行政复议、行政应诉事宜；  （五）对各级海关实施海关行政许可的情况进行监督检查；  （六）指导、协调各级海关实施海关行政许可的工作；  （七）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规定的其他应由海关总署负责的海关行政许可综合管理事项。  **第十二条** 各直属海关法制部门是各级海关关于海关行政许可的归口管理部门，具体承办下列事项：  （一）根据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的规定，承办收集、汇总、上报关于海关行政许可的立法建议、本关区关于海关行政许可的实施情况等事宜；  （二）受理、核实公民、法人、其他组织关于本关区实施海关行政许可的申诉、举报、意见建议，解答咨询；  （三）受理公民、法人、其他组织关于隶属海关实施海关行政许可的行政复议；  （四）承办或指导公民、法人、其他组织关于本关区实 施海关行政许可的行政应诉事宜；  （五）对本关区实施海关行政许可的情况进行监督检查；  （六）组织本关区关于海关行政许可的听证事宜；  （七）指导、协调本关区海关行政许可的实施工作；  （八）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规定的其他应由直属海关负责的海关行政许可综合管理事项。  **第十三条** 海关总署法制部门对规范性文件进行日常审查时或在办理行政复议案件过程中对规范性文件进行审查时，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及时纠正：  （一） 擅自设定海关行政许可的；  （二） 对海关行政许可作出规定时超出上位法设定的海关行政许可的范围的；  （三） 规定了超出上位法设定的海关行政许可条件的；  （四） 其他违反行政许可法规定的。  **第十四条** 直属海关法制部门在对本关制定的规范性文件进行审查过程中，发现规范性文件有违法规定海关行政许可内容的，应当提出纠正的建议。  **第十五条** 海关总署法制部门发现直属海关报送备案的规范性文件中有违反行政许可法规定，擅自设定、规定海关行政许可内容的，应当责令直属海关自行纠正。  **第十六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发现海关总署规章及其他规范性文件有违反行政许可法规定的，可以向海关总署或各级海关反映；对规章以外的有关海关行政许可的规范性文件有异议的，在对不服海关行政许可具体行政行为申请复议时，可以一并申请审查。  **第四章 海关行政许可的实施**  **第一节 海关行政许可的实施机关**  **第十七条** 海关应当在法定权限内，以本海关的名义统一实施海关行政许可。  海关内设机构和海关派出机构不得以自己的名义实施海关行政许可。  海关根据法律、行政法规和海关总署规章的规定，可以委托其他海关或者其他行政机关实施海关行政许可。委托海关应当将受委托海关或者其他行政机关以及受委托实施海关行政许可的内容予以公告。委托海关对委托行为的后果依法承担法律责任。受委托海关或者其他行政机关不得转委托。  **第十八条** 需要海关内设的多个机构办理的海关行政许可事项，该海关应当确定一个机构以海关的名义统一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统一送达海关行政许可决定。  **第二节 申请与受理**  **第十九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从事与海关进出境监督管理相关的特定活动，依法需要取得海关行政许可的，应当向海关提出申请。  **第二十条** 申请海关行政许可应当以书面形式提出。申请书需要采用格式文本的，海关应当向申请人提供海关行政许可申请书格式文本，并且将示范文本和填制说明在办公场所公示。申请书格式文本中不得包含与申请海关行政许可事项没有直接关系的内容。  **第二十一条** 海关行政许可申请可以由申请人到海关办公场所提出，也可以通过信函、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等方式提出。  海关行政许可申请以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等方式提出的，申请人应当提供能够证明其申请文件效力的材料。  **第二十二条** 申请人可以委托代理人提出海关行政许可申请。但是，依据法律、行政法规的规定，应当由申请人到海关办公场所提出海关行政许可申请的除外。  申请人委托代理人代为提出海关行政许可申请的，应当出具授权委托书。授权委托书应当具体载明下列事项，由委托人签章并且注明委托日期：  （一） 委托人及代理人的简要情况。委托人或代理人是法人或其他组织的，应载明名称、地址、电话、邮政编码、法定代表人或负责人的姓名、职务；委托人或代理人是自然人的，应载明姓名、性别、年龄、职业、地址、电话及邮政编码；  （二）代为提出海关行政许可申请、递交证据材料、收受法律文书等委托事项及权限；  （三）委托代理起止日期；  （四）法律、行政法规及海关总署规章规定应当载明的其他事项。  **第二十三条** 申请人申请海关行政许可，应当按照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规定向海关提交有关材料，并且对申请材料内容的真实性负责。  海关不得要求申请人提交与其申请的海关行政许可事项无关的技术资料和其他材料。  **第二十四条** 对申请人提出的海关行政许可申请，应当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处理：  （一）申请事项依法不需要取得海关行政许可的，应当即时告知申请人；  （二）申请事项依法不属于本海关职权范围的，应当即时作出不予受理的决定，并且告知申请人向其他海关或者有关行政机关申请；  （三）申请人不具备海关行政许可申请资格的，应当作出不予受理的决定；  （四）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在签收申请材料后5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为受理；  （五）申请材料仅存在文字性、技术性或者装订等可以当场更正的错误的，应当允许申请人当场更正，并且由申请人对更正内容予以签章确认；  （六）申请事项属于本海关职权范围，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申请人按照本海关的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的，应当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  依据前款第（一）、（四）项规定作出告知，以及决定受理或者不予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的，应当制发相应的《海关行政许可申请告知书》（样式见附件1）、《海关行政许可申请受理决定书》（样式见附件2）、《海关行政许可申请不予受理决定书》（样式见附件3），并且加盖本海关行政许可专用印章，注明日期。  对有数量限制的海关行政许可事项，应当在《海关行政许可申请受理决定书》中注明受理的先后顺序。  **第二十五条** 海关负责海关行政许可事项的机构或者依照本办法第十八条规定负责统一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的机构收到海关行政许可申请之日，即为海关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之日；以信函申请的，海关收到信函之日为申请之日；以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等方式提出申请的，海关收到有证明效力材料之日为申请之日。  **第二十六条** 海关在申请人全部补正申请材料后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的，收到全部补正申请材料之日为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之日。  **第二十七条** 依法作出不予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决定的，应当说明理由，并且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三节 审查与决定**  **第二十八条** 海关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后，应当对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进行审查。  根据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规定的条件和程序，需要对申请材料的实质内容进行核实，或者需要对申请人是否具备准予海关行政许可的其他条件进行实际核查的，海关可以就有关内容进一步进行核查。  对海关行政许可申请进行核查的，海关应当指派两名以上工作人员共同进行。核查人员应当根据核查的情况制作核查记录，并且由核查人员与被核查方共同签字确认。被核查方拒绝签字的，核查人员应予注明。  **第二十九条** 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能够当场作出决定的，应当当场作出书面的海关行政许可决定。  当场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的，应当当场制发决定书，并且加盖本海关印章，注明日期，同时不再制发《海关行政许可申请受理决定书》。  **第三十条** 海关对行政许可申请进行审查时，发现行政许可事项直接关系他人重大利益的，应当告知申请人、利害关系人，申请人、利害关系人有权进行陈述和申辩。  能够确定具体利害关系人的，应当直接向有关利害关系人制发加盖本海关行政许可专用印章的《海关行政许可利害关系人告知书》（样式见附件4），利害关系人为不确定多数人的，可以公告告知。  告知利害关系人，应当同时随附申请人的申请书及申请材料，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材料除外。  海关应当听取申请人、利害关系人的意见。申请人、利害关系人的陈述和申辩意见应当纳入海关行政许可审查范围。  **第三十一条** 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规定实施海关行政许可应当听证的事项，或者海关认为需要听证的涉及公共利益的其他重大海关行政许可事项，海关应当向社会公告，并且举行听证。  海关行政许可直接涉及申请人与他人之间重大利益关系的，海关在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前，应当告知申请人、利害关系人享有要求听证的权利。  海关应当根据听证笔录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  海关行政许可听证的具体办法由海关总署另行制定。  **第三十二条** 除当场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的外，海关应当自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20日内不能作出决定的，经本海关负责人批准，可以延长10日，并且应当制发《延长海关行政许可审查期限通知书》（样式见附件5），将延长期限的理由告知申请人。  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三十三条** 依法应当先经下级海关审查后报上级海关决定的海关行政许可，下级海关应当根据法定条件和程序进行全面审查，并且于受理海关行政许可申请之日起20日内审查完毕，将审查意见和全部申请材料直接报送上级海关。上级海关应当自收到下级海关报送的审查意见之日起20日内作出决定。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三十四条** 申请人的申请符合法定条件、标准的，应当依法作出准予海关行政许可的决定；申请人的申请不符合法定条件、标准的，应当依法作出不予海关行政许可的决定。  作出准予或者不予海关行政许可的决定，应当制发相应的决定书，并且加盖本海关印章，注明日期。  依法作出不予海关行政许可决定的，应当说明理由，并且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三十五条** 申请人在海关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之前，可以向海关书面申请撤回海关行政许可申请。  **第三十六条** 海关作出准予海关行政许可的决定，需要颁发海关行政许可证件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10日内向申请人颁发加盖本海关印章的下列海关行政许可证件：  （一）许可证、执照或者其他许可证书；  （二）资格证、资质证或者其他合格证书；  （三）准予海关行政许可的批准文件或者证明文件；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海关行政许可证件。  **第三十七条** 海关行政许可的适用范围没有地域限制的，申请人取得的海关行政许可在全关境范围内有效；海关行政许可的适用范围有地域限制的，海关作出的准予海关行政许可决定应当注明。  海关行政许可的适用有期限限制的，海关在作出准予海关行政许可的决定时，应当注明其有效期限。  **第四节 变更、延续与撤回**  **第三十八条** 被许可人在取得海关行政许可后，因为拟从事活动的部分内容超过准予海关行政许可决定或者海关行政许可证件规定的活动范围，或者是发生其他变化需要改变海关行政许可的有关内容的，可以向作出准予海关行政许可决定的海关申请变更原海关行政许可。  海关应当将有关海关行政许可的变更条件、变更程序予以公布，便于被许可人依法办理变更手续。  **第三十九条** 被许可人要求变更海关行政许可的，应当在该行政许可的有效期内，以书面形式向作出准予海关行政许可决定的海关提出申请，并且按规定提交有关材料。  **第四十条** 对被许可人提出的要求变更海关行政许可事项的申请，作出准予海关行政许可决定的海关应当依法进行审查，对符合法定条件、标准的，应当准予变更，并且依法办理变更手续。  海关对变更申请进行审查，并且作出是否准予变更决定的，应当及时、准确，最长不得超过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的法定期限。  **第四十一条** 申请变更的事项如属于另一海关行政许可的，申请人应当依法重新申请海关行政许可，海关不得以变更海关行政许可的形式办理。  **第四十二条** 被许可人需要延续依法取得的海关行政许可的有效期的，应当在该行政许可有效期届满30日前向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的海关提出书面申请，并且说明理由。但是，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四十三条** 对被许可人提出的要求延续海关行政许可有效期的申请，作出准予海关行政许可决定的海关应当依法进行审查，对仍符合取得海关行政许可的条件，并且符合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规定的延续海关行政许可应当具备的其他条件的，应当依法作出准予延续的决定；对不再具备取得海关行政许可的条件，或者不符合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规定的延续海关行政许可应当具备的其他条件的，应当依法作出不予延续的决定。  **第四十四条** 海关应当在海关行政许可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逾期未作决定的，视为准予延续。  **第四十五条** 海关不得擅自改变已生效的海关行政许可。  海关行政许可所依据的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修改或者废止，或者准予海关行政许可所依据的客观情况发生重大变化，为了公共利益的需要，海关依法变更或者撤回已经生效的海关行政许可，由此给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造成财产损失的，应当依法给予补偿。  补偿程序和补偿金额由海关总署根据国家有关规定另行制定。  **第四十六条** 海关依法不予办理海关行政许可变更手续、不予延续海关行政许可的有效期或者依法变更、撤回已经生效的海关行政许可的，应当制发加盖本海关印章的决定书，注明日期，并且说明具体理由，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五节 特别程序**  **第四十七条** 海关行政许可的实施，本节有规定的，适用本节规定；本节没有规定的，适用本章其他有关规定。  **第四十八条** 对在进出境活动中提供公众服务并且直接关系公共利益的行业，赋予法人或者其他组织从事与进出境活动有关的特定活动的资格、资质的，应当根据对申请人的专业人员构成、技术条件、经营业绩和管理水平等的考核、审查、评定结果，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  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六节 回 避**  **第四十九条** 办理海关行政许可事项的海关工作人员是申请人、利害关系人的近亲属，或者与申请人、利害关系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办理海关行政许可的，应当申请回避。  申请人认为办理海关行政许可事项的海关工作人员是海关行政许可事项的利害关系人或者是利害关系人的近亲属，或者与利害关系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办理海关行政许可的，有权申请其回避。  利害关系人认为办理海关行政许可事项的海关工作人员是申请人的近亲属，或者与申请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办理海关行政许可的，有权申请其回避。  **第五十条** 办理海关行政许可事项的海关工作人员的回避由海关行政许可审批机构负责人决定，海关行政许可审批机构负责人的回避由海关行政许可审批机关负责人决定。  **第五章 监督检查**  **第五十一条** 上级海关应当加强对下级海关实施海关行政许可的监督检查，及时纠正海关行政许可实施中的违法行为。  海关法制、监察、督察部门负责对违法实施海关行政许可的行为进行监督检查。  **第五十二条** 海关应当建立健全监督检查制度，通过核查反映被许可人从事海关行政许可事项活动情况的有关材料，履行监督检查责任。  海关可以对被许可人生产经营场所依法进行实地检查。检查时，海关可以依法查阅或者要求被许可人报送有关材料，被许可人应当如实提供有关情况和材料。  海关依法对被许可人从事海关行政许可事项的活动进行监督检查时，应当将监督检查的情况和处理结果予以记录，由监督检查人员签字，并且归档。  公众有权查阅海关的监督检查记录，但是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海关工作秘密的除外。  **第五十三条** 海关实施监督检查，不得妨碍被许可人正常的生产经营活动，不得索取或者收受被许可人的财物，不得谋取其他利益。  **第五十四条** 被许可人在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的海关管辖区域外违法从事海关行政许可事项活动的，违法行为发生地的海关应当依法将被许可人的违法事实、处理结果抄告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的海关。  **第五十五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发现违法从事海关行政许可事项的活动，有权向海关举报，海关应当及时核实、处理。  **第五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作出海关行政许可决定的海关或者其上级海关，根据利害关系人的请求或者依据职权，可以撤销海关行政许可：  （一）海关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作出准予海关行政许可决定的；  （二）超越法定职权作出准予海关行政许可决定的；  （三）违反法定程序作出准予海关行政许可决定的；  （四）对不具备申请资格或者不符合法定条件的申请人准予海关行政许可的；  （五）依法可以撤销海关行政许可的其他情形。  被许可人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海关行政许可的，应当予以撤销。  依照前两款的规定撤销海关行政许可，可能对公共利益造成重大损害的，不予撤销。  **第五十七条** 被许可人取得海关行政许可后从事违法活动，依法需要吊销其取得的海关行政许可证件的，海关应当依法吊销其海关行政许可证件。  **第五十八条** 撤销海关行政许可、吊销海关行政许可证件应当依据法律、行政法规或者海关总署规章规定的程序办理。  **第五十九条** 海关依照行政许可法及本办法第五十七条第一款规定撤销海关行政许可，致使被许可人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海关应当依法对其直接损失给予赔偿。  依照本办法第五十七条第二款的规定撤销海关行政许可的，被许可人基于海关行政许可取得的利益不受保护。  **第六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应当依法办理有关海关行政许可的注销手续：  （一）海关行政许可有效期届满未延续的；  （二）赋予公民特定资格的行政许可，该公民死亡或者丧失行为能力的；  （三）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终止的；  （四）海关行政许可依法被撤销、撤回，或者海关行政许可证件依法被吊销的；  （五）因不可抗力导致海关行政许可事项无法实施的；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应当注销海关行政许可的其他情形。  **第六章 法律责任**  **第六十一条** 海关及海关工作人员违反有关规定的，按照行政许可法第七章的有关规定处理。  **第六十二条** 被许可人违反行政许可法及有关法律、行政法规、海关总署规章规定的，海关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给予行政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三条** 海关工作人员违反有关规定依法应当给予行政处分的，由所在海关单位的人事、监察部门提出处理意见，报所在单位负责人做出处理决定并且向上级主管部门报告。对依法应当追究刑事责任的移交有关机关处理。  **第七章 附 则**  **第六十四条** 海关提供海关行政许可申请书格式文本，不得收费。  海关实施海关行政许可和对海关行政许可事项进行监督检查，不得收取任何费用。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海关实施海关行政许可所需经费应当列入海关预算，由财政予以保障，按照批准的预算使用经费。  **第六十五条** 海关实施海关行政许可，依照法律、行政法规收取费用的，应当按照公布的法定项目和标准收费；所收取的费用必须全部上缴国库，不得以任何形式截留、挪用、私分或者变相私分。  **第六十六条** 本办法规定的海关实施海关行政许可的期限以工作日计算，不含法定节假日。  **第六十七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六十八条** 本办法自2004年7月1日起施行。 |